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혼인 장려를 위해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됨에 따라 감면 취지를 고려해 해당 감면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한편, 농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3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이 같은 법 제31조의3으로 이관된 점을 반영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17.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제 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제76조제1항”을 “제76조제1항, 제92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31조제1항·제2항”을 “제31조제1항·제2항, 제31조의3제1항·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4조(비과세) ①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2. (생략)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감면 4. (생략) ② ~ ⑥ (생략) ⑦ 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제2항, 제29조의6,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5조의2, 제98조의3,	제4조(비과세) ① ----- ----- ----- -----. 1.·2. (현행과 같음) 3. ----- ----- ----- ----- ----- 제14조의3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1. ----- ----- ----- ----- ----- ----- 제76조 제1항, 제92조-----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133